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6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송재봉의원안)	2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2
나. 검토의견	13
2. 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송재봉의원안) ...	18

I. 개요

1.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96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산업분야의 인재 채용 등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도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63조의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첨단산업인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송재봉의원안)

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요

□ 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R&D 세액공제”)는 ① 일반 R&D 세액공제와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③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음.

일반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 중 유리한 계산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당기분 방식’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20%,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증가분 방식’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는 ‘당기분 방식’이 적용되는데,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신성장·원천기술¹⁾은 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생략)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의 20~35%를 공제하고,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를 공제함.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하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기술²⁾로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이 10%p 높은 수준이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R&D 비용의 30~45%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40~50%를 공제받음.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5년(일반) 또는 3년(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 본문, 제1호 생략)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기존 10개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되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전후 비교]

종 전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3/7)* * 단, 대기업은 '20년 2%,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까지 5%, 10% 적용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⑦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⑨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⑩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0/2/3) ※ 괄호: 대/중견/중소기업 공제율(%)	⇒ (공제대상)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제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업종에서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되며, 세액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인데 토지와 건축물 등은 제외됨. 또한, 중고품, 임대용 자산 및 리스에 의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금

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임. '추가공제 금액'은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제됨.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율이 대기업 1%·중견기업 5%~7.5%·중소기업 10%이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3%·중견기업 6%~9%·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대기업 15%·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임.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종료 후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점감구조가 도입되어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 동안은 일반 중견기업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5%p 상향된 기본공제율이 적용됨.

[통합투자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 ¹⁾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3	6, 9 ²⁾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15	15, 20 ³⁾	25	
반도체 분야	20	20, 25 ⁴⁾	30	

주) 추가분=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1) (~3년)7.5%, (4년~)5%

2) (~3년)9%, (4년~)6%

3) (~3년)20%, (4년~)15%

4) (~3년)25%, (4년~)20%

한편, 그동안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법률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 직접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바이오의약품,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이 추가되었음³⁾.

3) 바이오의약품: 2023년 12월 세법개정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2025년 2월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술 현황4)]

구분	분야	기술
미래형자동차	자율 주행차	자율주행 기록 및 사고원인 규명 기술, 탑승자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등
	전기 구동차	전기차 초고속·고효율 무선충전 기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지능정보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기술, , 언어이해 기술 등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 IoT 플랫폼 기술 등
	클라우드(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술, PaaS(Platform as a Service) 기술 등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 수집·정제·저장 및 처리기술,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등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관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유연한 양·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제조기술 등
	IT 융합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등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 등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등
차세대소프트웨어 (SW) 및 보안	기반 소프트웨어(SW)	융합서비스·제품의 소프트웨어 내재화 기술 등
	융합보안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Intelligence) 대응기술 등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콘텐츠 기술 등
	문화콘텐츠	게임 콘텐츠 제작기술 등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	지능형 반도체·센서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제조 기술 등
	반도체 등 소재·부품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고기능 디스플레이	9인치 이상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패널 기능개선 및 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등
	3D프린팅	3D프린팅 소재·장비 개발 및 제조기술 등
	AR 디바이스	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차세대 방송통신	5세대(5G) 및 6세대 (6G)이동통신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기술 등
	UHD (Ultra-High Definition)	지상파 UHD방송 송신기 성능 향상기술 등
바이오·헬스	바이오·화합물의약	방어 항원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등
	의료기기·헬스케어	기능 융합형 초음파 영상기술 등
	바이오 농수산물·식품	비가열 및 고온·고압 전처리 기술 등
	바이오 화학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기술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등
	발전시스템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제작·조립·시험 평가기술 등
	원자력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등

4) 202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미래형 운송수단 및 인공지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었으나,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2025년 4월 기준).

구분	분야	기술
	오염방지·자원순환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등
융복합소재	고기능섬유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초경량 금속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등
	하이퍼 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등
	구리합금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제조기술 등
	특수강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등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가공 기술 등
	희소금속·소재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등
로봇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	고정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 등
	안전로봇	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 기술, 실내외 전천후 위치인식 및 주행 기술 등
	의료 및 생활 로봇	수술, 진단 및 재활 로봇기술 등
	로봇공통	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 등
항공·우주	무인이동체	무인기 지능형 자율비행 제어 시스템 기술 등
	우주	위성본체 부분품 개발기술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소재	고기능성 알루미늄 도금강판 제조 기술 등
	첨단 부품	고정밀 롤러베어링 및 볼베어링 설계·제조 기술 등
	첨단 장비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제조기술 등
탄소중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수소	부생수소 생산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스택·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산업공정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등
	에너지효율·수송	지능형 전력계통(Smart Grid) 설계 및 제조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등
방위산업	방산장비	추진체계 기술 등
	전투지원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25. 2. 28. 개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 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HBM, LLC, CXL, SOM) 설계·제조기술
	고속 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nm이하) 기술(tem on Chip) 설계 및 제조(7nm 이하) 기술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제조기술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차량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및 전력관리 반도체[BCDMOS(Bipolar-CMOS-DMOS), UHV(Ultra High Voltage), 고전압 아날로그 IC(Integrated Circuit), PMIC(Power Management IC)] 설계·제조기술(0.35 μ m이하)
	차세대 디지털기기·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파운드리용 IP 설계 및 검증 기술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팩 제조기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선별 기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차세대 리튬이차전지 부품·소재·셀 및 모듈 제조 기술
	하이니켈 양극재 제조기술
	장수명 음극재 제조기술
	이차전지 분리막 및 전해액 제조기술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술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분야	기술
백신	방어 항원 등 스크리닝 및 제조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 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원료 및 원부자재 등 개발·제조 기술
	생산장비 개발·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AMOLED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친환경 QD(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기술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Epi)·전사·접합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수소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탄소포집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압축·저장·충전 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수소 가스터빈(혼소·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미래형 이동수단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바이오 베타(Bio Better)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후보물질 발굴 및 바이오 신약 제조 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 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2025. 2. 28. 개정)

R&D 세액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20년 2조 7,340억원에서 2023년 4조 6,30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3조 99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R&D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910	954	1,057	1,081	1,013	1,080
법인세	26,430	26,342	36,173	45,221	28,562	29,910
합 계	27,340	27,296	37,231	46,302	29,575	30,990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은 2020년 6,226억원에서 2023년 2조 79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실적회복으로 2025년에는 4조 2,88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득세	217	491	810	1,036	1,269	1,295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64	16,134	41,590
합 계	6,226	13,459	21,997	20,799	17,402	42,883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1,660개가 1조 5,150억 1,800만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18개가 3조 70억 4,0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R&D 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4,370	26,931	1	11
20억원 이하	6,119	56,352	4	36
50억원 이하	11,814	203,843	17	536
100억원 이하	8,470	254,558	32	1,665
200억원 이하	5,506	278,567	57	2,980
300억원 이하	2,090	160,621	44	2,761
500억원 이하	1,797	198,988	93	7,155
1,000억원 이하	1,169	229,272	171	26,106
5,000억원 이하	324	102,498	872	319,207
5,000억원 초과	1	3,388	427	2,646,583
합계	41,660	1,515,018	1,718	3,007,040

자료: 국세통계포털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8,926개가 4,013억원을 신고했고, 일반법인 1,752개가 1조 3,789억 200만원을 신고했음.

[2023년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수입금액 규모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 법인수	금액	신고 법인수	금액
10억원 이하	1,063	2,172	2	104
20억원 이하	874	3,752	2	84
50억원 이하	1,744	16,690	9	80
100억원 이하	1,392	28,987	22	240
200억원 이하	1,520	59,975	76	2,187
300억원 이하	789	48,214	52	2,327
500억원 이하	757	70,227	98	3,921
1,000억원 이하	610	102,277	219	12,769
5,000억원 이하	u	56,247	833	138,317
5,000억원 초과	u	12,759	439	1,218,875
합계	8,926	401,300	1,752	1,378,902

자료: 국세통계포털

나. 검토의견

현 행					개정안
☐ R&D 세액공제(제10조) ○ 유형별 공제율 (단위: %)					☐ R&D 세액공제(제10조) ○ <u>첨단산업인재 인력개발비 공제 신설</u> - 적용대상: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공제율: 20% ○ <u>적용기한: 2029년 12월 31일</u> ○ <u>시행일: 공포 후 6개월(송재봉의원안)</u>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 반	최대 28	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송재봉의원안 2024. 12. 26. 발의(의안번호 6966)

☐ 개정안은 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첨단산업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20% 상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임.

동법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의 이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관련 인재 육성에 산업계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⁵⁾

[주요국 첨단산업 인재육성 지원내용]

국가	내 용
미국	5년간('23~'27) 반도체 및 첨단산업 인재육성에 132억불(17조원) 투자 * 단기 반도체 인재육성 2억불, 첨단기술(반도체포함) 인재육성 130억불
유럽	반도체 인재육성에 2억유로(0.3조원) 투자 *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학원 과정, 인턴십 등 숙련 인재육성
대만	10년간('21~'30) 반도체 인재육성에 95억대만달러(0.4조원) 투자 * 산학연계 반도체대학원 설치 지원 및 정원 확대 추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한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르면,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아

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9

래 표), ②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및 ③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을 말함.

[첨단산업 지정현황]

분야	기술
반도체	첨단 메모리반도체 산업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
	첨단 패키징 산업
	연관산업(자동차, 통신, 사물인터넷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반도체 산업
이차전지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산업
	고용량 양극재 산업
	초고성능 전극 또는 차세대 배터리 산업
	배터리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
디스플레이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산업
	친환경 퀀텀닷(QD) 소재 패널 산업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패널 산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산업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관한 고시」 [별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제2호 관련) 2024. 2. 14. 제정

또한,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함.

□ 개정안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 채용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비수도권 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지출한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방소재 첨단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과도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현재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첨단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및 바이오 분야로 4개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고,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한 상황이며, 2025년 2월 세법개정에 따라 적용기한이 2029년 말(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말)까지 연장되었음.

만약 첨단산업인재 인력개발비에 대해 2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특정 지역 소재 기업 또는 산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R&D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율]

(단위: %)

구 분	기 본			추가 ^{주)}
	대	중견	중소	
일반 (당기분 방식)	최대 2	8~20 ¹⁾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²⁾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³⁾	40	최대 10

주)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1) (~3년)20%, (4~5년)15%, (6년~)8%

2) (~3년)25%, (4년~)20%

3) (~3년)35%, (4년~)30%

□ 참고로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하여 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905)」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154

2. 첨단산업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송재봉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첨단산업인재 소득세 감면 (안제63조의4)</u> ○ 요건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산업인재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첨단산업 관련 기업 중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 ○ 감면율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70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송재봉의원안 2024. 12. 26. 발의(의안번호 6966)

☐ 개정안은 첨단산업인재⁶⁾가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현행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춰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1월 제정되어 2025년부터 시행 중임.

이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자국 이익 실현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어 기술 패권 확보 중요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기술패권 확보의 핵심 열쇠인 인재육성에 산업계 참여를 촉진시킬

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2.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필요에 따른 것으로, 현재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수인재 확보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인재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⁷⁾

[표 1] 주요국 첨단산업 인재육성 지원내용

국가	내 용
미국	5년간('23~'27) 반도체 및 첨단산업 인재육성에 132억불(17조원) 투자 * 단기 반도체 인재육성 2억불, 첨단기술(반도체포함) 인재육성 130억불
유럽	반도체 인재육성에 2억유로(0.3조원) 투자 * 유럽반도체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학원 과정, 인턴십 등 숙련 인재육성
대만	10년간('21~'30) 반도체 인재육성에 95억대만달러(0.4조원) 투자 * 산학연계 반도체대학원 설치 지원 및 정원 확대 추진

□ 개정안과 같이 조세 특례를 통해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위치한 첨단산업 기업에 취업하여 수도권 밖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첨단산업인재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첨단산업으로 우수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기업이 위치한 해당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 산업과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 개정안은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상 첨단산업인재가 수도권 밖의 사업장에 위치한 첨단산업기업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액 공제를 규

7)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 2023.9

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 산업으로의 취직 및 근로를 이유로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소득세를 감면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 소재 첨단산업과 기타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유사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관련 세제지원은 기(既) 운영 중인데,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⁸⁾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구인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라 인력수급 여건이 양호한 첨단산업 대·중견기업까지 아울러 지원할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는 소득세 감면요건의 대상자 및 대상 기업의

8) 청년 등이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소득세 감면요건 대상자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르는 ‘첨단산업인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대상자가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법 제2조제1호의 첨단산업⁹⁾과 관련한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산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첨단산업의 범위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첨단산업인재 역시 첨단산업 분야 내에서 그 대상자가 지정됨에 따라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범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조세지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해당 개정안은 일반 국민에게 수혜적인 개정 사항이나,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권의 자의적 확장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¹⁰⁾, 첨단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는 동 개정안은 세제혜택 대상자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9)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10) 대법원 선고 2008두 8499

참고로, 첨단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하여 조세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¹¹⁾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11) 의안번호 2206965,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